

한국건축단체연합회(가칭)에 대하여

FIKA;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이관영 / 본 협회 이사, (주)한인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Young

WTO에 의한 건축설계서비스업무의 자유화에 따라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건축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협정]이 1999년 6월 북경 UIA 대회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건축사 제도도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그간 학계에서 오랫동안 추진되어온데 건축교육제도의 개선노력과 궤를 같이하여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각 단체와 교육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해온 것 외에도, 본 협회에서 실시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 1997. 2]과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 1999. 9]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본협회와 건축가협회 및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1999. 12]등의 결과를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제도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과 새로운 시험형태에 따른 출제방식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건축교육의 서구화나 미국일변도의 제도개선에 그 본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까지나 세계수준과 동등한 건축교육제도와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부는 물론 건축관련 단체 모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건축사제도 개선]이 건축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건축교육과 행정면에서의 협력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3단체(협회, 가협회, 학회)]는 [건축3단체 협의회], 혹은 [건축3단체 국제교류협의회] 등을 통하여 협조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건축관련단체협의회(FIKA)이다.

협회의 UIA가입신청과 ad hoc body, 그리고 ad hoc body와 FIKA : 협회는 격변하는 건축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정식회원단체로서 UIA활동에 직접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1999년 6월 (UIA)회원가입을 신청하였다. 우리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1999년 11월 UIA는 (가능하면 두단체가 공동참여하는 공동기구(ad hoc body)를 구성하여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고, 양 단체는 이를 받아들여 2000년 5월에 ad hoc body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단체를 대표하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ad hoc body의 구체적인 구성을 논의하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한국건축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확대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FIKA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즉각 UIA에 통보되었고, 2000년 6월 시드니에서 열린 UIA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ad hoc body(FIKA)에 의한 가입을 승인 받았다. 그 후 세부절차에 대한 각 단체 내부의견의 조율 등으로 사무국의 구성이 지연되어 오던 중 건축학회가 참여를 희망하게 되었으며, 비로서 3단체에 의한 FIKA의 구성이 구체화 되기에 이르렀다. 본 협회의 입장은 당초 ad hoc body의 구성을 위한 양 단체간의 논의에서 합의된 순서에 따라, 타 건축관련 단체에게 가입을 위한 문호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우선 양단체만으로 FIKA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위에서와 같은 사정으로 FIKA의 구성이 지연되게 되자, 자연스럽게 건축학회가 FIKA의 창립멤버로서 논의에 참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내외 건축계의 변화에 3단체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서

로 협력해야 한다는 명분에도 합당한 일이다. 현재 FIKA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 즉 사무국의 구성, 위치, 예산, 각 협회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FIKA 구성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의하여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간안에 마무리 될 것이다. 참고로 실무위원회는 당초에 가협회(최관영, 조성중, 김영섭)와 본 협회(김지덕, 이관영, 이근창)의 양단체로 출발하였으나, 뒤에 학회가 가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학회(이현우, 임창복, 최찬환)를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IKA가 한 일과 해야 할 일 : 비록 정식으로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은 갖지 않았다 하나, FIKA의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별씨 3단체간의 공조에 따른 (밝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멀리로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건축사 시험문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국제 회의에서의 공동보조, 정책제안에 대한 3단체간의 의견교류 등 전례없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정부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법·건축적인 협의 기구]의 발족을 반기워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입안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FIKA가 해야 할 일은 많다. WTO 및 UIA협정과 관련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가 나왔다 하나, 그 내용은 겨우 frame-work의 수준일 뿐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교육제도가 그렇고, 인증원의 설립 및 인증 행위, 건축사 인턴과정을 위한 제도와 기구의 마련, 시험제도와 출제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건축사 등록제도의 개선, 건축사에 대한 계속교육의 실시, 설계입찰방식에 대한 연구,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연구,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건축사위원회의 구성 등, 실로 산적한 문제들을 떠안아야 한다.

FIKA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필요한 사항 : FIKA가 정식구성되기 위하여는 먼저 필요한 정관(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대강 기구의 명칭, 사무국의 위치, 조직의 구성, 회장 및 임직원의 권한과 의무, 선출 방법, 의결 결정 방법, 재정, 그리고 3단체간의 역할 분담(업무분담과 재정 분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 들이다.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논의를 마친 상태이다. 다만 재정분담과 역할분담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FIKA의 막중한 업무로 볼 때 재정부분이 제일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더구나 전례없이 설계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이 때, 막대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물론 FIKA의 업무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는 명분으로 볼 때, 위에 열거한 제도연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도 요구할 생각이다. 또한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모든 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역할 분담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책임과 의무 또한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 단체 모두 일련의 제도개선문제에 관한 한 제한된 인물만이 독점하다시피 참여하고 있다. 이는 그 인물의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반대로 그 직책이 탐이나서도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부득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보니 개인의 능력이라는게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전문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중한 회생을 강요받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전문적인 지식과 인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회원 각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참여는 주로 자원봉사(Volunteer)에 의하기 마련인데, 경제적인 여건과 사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자원하는 인력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FIKA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어도 10년여의 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력의 확보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단체와 회원의 각오: 이상으로 FIKA의 탄생경위와 임무, 실무회의의 경과를 소개하였다. 계획대로라면, FIKA의 임무는 막중하며, 우리나라 건축계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해 나가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단체 나름대로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막연한 기득권)에 대한 미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까지의 경험은, 무엇보다 건축계가 힘을 합쳐 공동대처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단체는 물론 각 단체의 회원, 특히 건축사 개개인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협회활동에의 참여는 자원봉사적 입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모든 일을 협회 집행부나 일부 자원봉사자에게 떠맡겨서는 곤란하다. 스스로 협회의 주인이 되어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젊은 건축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협회의 앞날이 매우 희망적임을 보여주는 듯하여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된다. ■